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악취실태조사 및 지도·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

생활악취에 대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자치법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○ 악취실태조사(안 제5조)

○ 지도감독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악취실태조사 및 지도·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본 조례안의 목적, 구청장의 책무 등에 조문을 살펴보면, 생활악취의 “방지 및 저감”이 주된 요지임에 따라 제명이 조례 내용을 대표할 수 있게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(추진계획 수립·시행)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5조(실태조사)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배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8조(지도·감독)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·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 결과

- 2020년7월 우리 구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였고, 이에 근거하여 9개 지역 빗물받이 469개소에 ‘하수악취 저감 탈취제 투입 사업(총22회)’,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‘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’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러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생활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생활악취는 두통·메스꺼움 등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,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, 불쾌한 생활악취는 문화도시 영등포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을 정비 및 보강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임.
-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감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예산이 적절히

사용되는지,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. 이를 통해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6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이순우, 최봉희, 이성수
유승용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악취실태조사 및 지도·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치법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나. 악취실태조사(안 제5조)

다. 지도감독(안 제8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약취방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5. 16. ~ 5. 20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법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1. “악취”란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영등포구의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”로, “저감”을 “저감(이하 “방지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, 제7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추진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
3.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6조(중전의 제4조)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생활악취를 관리하기”를 “생활악취 방지 등을”로, “악취 발생현황”을 “생활악취 발생현황”으로, “악취지도”를 “생활악취지도”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4조)의 제목 “(악취지도의 작성)”을 “(생활악취지도의 작성)”으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5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생활악취의 방지를”을 “생활악취 방지 등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악취검사”를 “생활악취 검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악취방지시설”을 “생활악취 방지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악취발생”을 “생활악취발생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지도감독)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악취”란 <u>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생활악취”란 「<u>악취방지법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영등포구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악취”란 「<u>악취방지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.</p> <p>2. ----- <u>법 제2조제3호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</u> ----- ----- <u>저감</u> (이하 “방지 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제4조(추진계획 수립·시행) <u>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</u></p> |

<신 설>

제4조(악취지도의 작성)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사업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

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 대책
3.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악취지도의 작성) --- 생활악취 방지 등을 ----- 생활악취 발생현황 ---- 생활악취 지도-----.

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생활악취 방지 등을 -----

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
2.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
3. (생략)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(생략)

<신설>

제6조 (생략)

-----.

1. 생활악취 검사 -----
2. 생활악취 방지시설 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생활악취 발생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도감독) 구청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